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50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윤재옥・김기웅・박충권

이인선 · 최보윤 · 진종오

백종헌 • 권영진 • 이상휘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 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법률 제 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의 연합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제2호 중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을 "제3조제1호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		
	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노		
	동조합(노동조합의 연합단		
	체를 포함한다)		
<u>라.</u> (생 략)	<u>마.</u> (현행 라목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제4조(적용 범위)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	2 <u>제3조제1호나</u>		
<u>목 및 라목</u> 에 해당하는 공공	<u>목·라목 및 마목</u>		
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			
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